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3호 2019. 5. 15(수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34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349호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19
○ 하동군 조례 제2350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하동군 조례 제2351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하동군 조례 제2352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하동군 조례 제2353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 하동군 조례 제2354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 하동군 조례 제2355호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9-5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61
○ 하동군 고시 제2019-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김종*).....	64
○ 하동군 고시 제2019-5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임종0).....	65
○ 하동군 고시 제2019-60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사)야생차문화축제추진위).....	66
○ 하동군 고시 제2019-61호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68
○ 하동군 고시 제2019-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대한불교조계종쌍계*)..	70
○ 하동군 고시 제2019-64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서현건설(주)).....	71
○ 하동군 고시 제2019-6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73
○ 하동군 고시 제2019-67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하동군수(안전총괄과)).....	74
○ 하동군 고시 제2019-69호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76
○ 하동군 고시 제2019-7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이영*).....	77
○ 하동군 고시 제2019-7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하계*).....	78
○ 하동군 고시 제2019-73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김광*)..	79

회 람									
--------	--	--	--	--	--	--	--	--	--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9-500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	80
○ 하동군 공고 제2019-517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 하동군 공고 제2019-541호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제정(안)	94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9-486호	공인 신조 공고 .....	99
○ 하동군 공고 제2019-494호	2019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변경운영	100
○ 하동군 공고 제2019-499호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반송분 공시송달	117
○ 하동군 공고 제2019-525호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사항	134
○ 하동군 공고 제2019-53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8
○ 하동군 공고 제2019-535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150
○ 하동군 공고 제2019-53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9
○ 하동군 공고 제2019-53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18
○ 하동군 공고 제2019-550호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7급상당) 채용시험 계획	230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48 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을 “개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을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제23조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23조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신청은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⑮ 군수는 재해, 재난, 대규모 행사, 선거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비밀엄수) <u>공무원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1. 2. (생략)</p> <p>3. <u>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u></p> <p>4. (생략)</p>	<p>제3조의2(비밀엄수) <u>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u>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span style="float: right;">개인</span> ----- ----- ----- -----</p> <p>4. (현행과 같음)</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u>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u></p> <p>② <u>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u></p> <p>③ <u>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u></p>	<p>&lt;삭제&gt;</p>



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생략)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제9조(겸임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통보-----  
-----.

제10조(파견근무) ① -----

-----  
----- 사람은 -----  
-----  
-----.

② -----  
-----  
-----  
-----  
-----  
----- 통보-----.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삭 제>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 일수 · 정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 ④ (생략)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삭제>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  
-----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제외한다.

1. (생략)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③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  
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  
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  
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  
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  
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  
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  
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생 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생 략)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  
-----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  
-----  
-----  
-----.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삭 제>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⑩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학교의 초청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각각 10일

⑪ 군수는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 18조제2항에 따른다. 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금지한다.
- 2. 부서장은 장기재직휴가 허가 시는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 기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행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신 설>

제23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제23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신청은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⑮ 군수는 재해, 재난, 대규모 행사, 선거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삭 제>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49 호

###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동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

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항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의 양도·전대 및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는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장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제17조(임면) ①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임면시 원장이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시설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및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8조(전보)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19조(임기)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보수 및 퇴직금)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 2. 어린이집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
- 3.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 4. 보육사업 관련 행사 비용
- 5.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6.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 7. 그 밖에 영유아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 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 2.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4.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 제6장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

제24조(지도·명령)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제25조(보고·검사)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26조(준용) 보육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의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2.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 시설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50 호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결혼장려 지원”이란 결혼당사자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결혼(재혼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결혼장려 지원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출산용품 구입비”를 “출산축하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결혼장려 지원 사항 : 결혼장려금

제4조제2항 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1항, 제4조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b>분할지원</b> 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 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셋째아이 <b>1,000만원</b> ·넷째아이 <b>1,500만원</b> ·다섯째아이 이상 2,000만원 (단, 첫째아이·둘째아이·셋째아이는 첫회 100만원 지급 후 각각 1년·2년· <b>9년간</b> 분할 지급하고, 넷째아이는 첫 회 150만원 지급 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며, 다섯째아이 이상은 첫회 200만원 지급 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아이의 생일이 속한 월에 지급 하며, 개정사항은 공포일 이후 출생·입양아에 적용한다.)
2. 출산축하용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3.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4. 임신부 철분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로 등록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6개월분 철분제.
5. 임신부 양수 검사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양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양수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60만원 이내.
6.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2만원 이내.
7. 영유아 양육수당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별표 2]

## 전입세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제4조제2항 관련)

시 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세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전입 세대. · 2인 : 30만원 · 3인 : 50만원, (다만, 2인 전입세대 지원금을 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 4인 이상 : 70만원.
2.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이내.
3. 전입학생 지원금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50만원.
4.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군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전환복무자 포함).	휴가비 : 30만원. (휴가 1회당 15만원씩 2회 지급)
5.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u>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u>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6.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1회 지원.	전업 문화예술인에게 200만원 이내
7. 전입세대 팸투어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주요 시설물과 유적지, 관광지 등 현장 답사.
8. 결혼식장 무료 대여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하동문화예술회관 이용시 대관료 전액 감액.
9.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세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귀농 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내용> 가.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50만원 보조 나.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한 농가에 50만원 보조
10. 농지 및 축사등 알선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농지나 축사 등 영농기반이 없으나 뚜렷한 영농정착의지로 시책지원을 희망할 경우
11. 특별 영농교육	제1호 지원대상 중 해당자	귀농자만 별도 편성 및 전문지도사 지역 담당제
12. 빈집정보 제공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빈집 정보	빈집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밀상담 및 안내

[별표 3]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6항 관련, 제4조제1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p>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li> <li>-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li> </ul>



[별표 4]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제5조 관련)

구분	시책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다둥이 안전보험	행 정 과	
	영유아 양육수당	행 정 과	
	출산장려금	행 정 과	
	<u>출산축하용품</u>	<u>행 정 과</u>	
	출산용품 구입비	행 정 과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행 정 과	
	임산부 철분제	보 건 소	
	임산부 양수 검사비	보 건 소	
전입세대 지원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문화체육과	
	전입세대 팸투어	<u>관광진흥과</u>	
	결혼식장 무료 대여	문화체육과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행 정 과	
	전입세대 지원금	행 정 과	
	노인인구 전입세대 지원금	행 정 과	
	전입학생 지원금	행 정 과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행 정 과	
	빈집정보 제공	도시건축과	
	영농정착 보조금	<u>농촌진흥과</u>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u>농촌진흥과</u>	
특별 영농교육	<u>농촌진흥과</u>		
<u>결혼장려 지원</u>	<u>결혼장려금</u>	<u>행 정 과</u>	



( 뒷면 )

세 부 신 청 사 항			
결혼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명(夫)		생년월일
	대상자의 성명(婦)		생년월일
	혼인일자		전입일자 (다문화가정인 경우, 주민등록일자)
	<다문화 가정인 경우, 확인사항> 우리군의 동종 사업 보조사업 수혜여부 접수읍면에서 소관부서에 직접 확인		<input type="checkbox"/> 수혜사실(      년도)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혜사실 없음.
			대상자(남편) : 대상자(처)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결혼장려 지원”이란 결혼당사자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결혼(재혼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① ~ ⑤ (생략)</p> <p>&lt;신설&gt;</p>	<p>제3조(지원대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결혼장려 지원 대상은 별표 3과 같다.</u></p>
<p>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증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p> <p>1. 출산장려 지원 사항 : 출산장려금, <u>출산용품 구입비</u>,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임신부 철분제 지원, 임신부 양수 검사비,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p> <p>2. (생략)</p> <p>&lt;신설&gt;</p> <p>3.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의 세부 지원내용은</p>	<p>제4조(지원내용) ① ----- ----- -----.</p> <p>1 . ----- -- <u>출산축하용품</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u>결혼장려 지원 사항 : 결혼장려금</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p>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생략)

② 인구증대시책 업무의 소관부서는 별표 3과 같다.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4와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

하동군 조례 제 2351 호

###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 ----- ----- <u>20만원</u>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52 호

###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제1호와 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p>

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신 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생 략)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삭 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1 .  
-----  
-----  
-----  
----- 500원
- 2 .  
-----  
-----  
----- 1000  
원

② (생 략)

제12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  
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  
류터미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  
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7  
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재산세를 경감  
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하여 2  
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53 호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특산품 또는 군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제5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군 출연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제29조의 제목 “(토석채취료 등)”을 “(토석의 매각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원석시가는”을 “제1항의 매각대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감면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사용·수익허가) (생략)</p> <p>&lt;신설&gt;</p>	<p>제19조(사용·수익허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u>군 특산품 또는 군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경우</u> <u>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u></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5.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6. (생략)</p> <p>&lt;신설&gt;</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경 우</p> <p>6. (현행과 같음)</p> <p>7. <u>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군 출연기관이 사용하는 경우</u></p>

⑤ (생 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 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매각대금은 -----  
-----  
-----  
-----.

<삭 제>

<삭 제>

정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② (생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54 호

##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학관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한다.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제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 관리) ① <u>과학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u> 다만, <u>과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원을 두어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u> 다만, <u>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u></p>	<p>제4조(운영 관리) ① <u>과학관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한다.</u> ----- ----- ----- -----.</p> <p>② <u>군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u> ----- ----- ----- ----- ----- ----- ----- ----- ----- ----- ----- -----.</p>
<p>제8조(관람료) <u>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와 같이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u>다만, 개관 후 1년간은 무료관람을 시행한다.</u></p>	<p>제8조(관람료) ----- ----- -----.</p> <p>&lt;단서 삭제&gt;</p>
<p>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정신이상자</u></li> </ol>	<p>제11조(관람의 금지)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정신질환이 있는 사람</u></li> </ol>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55 호

###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지원계획 등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군수는 귀농인정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u>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u></p> <p>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및 「<u>농지법</u>」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농업”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 ----- <u>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u>)</u>----- -----.</p> <p>4. ----- <u>법</u> ----- -----.</p>
<p>제3조(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u>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p>	<p>제3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u>군수는 귀농인정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  
음과 같이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진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 하  
동축산업협동조합, 한국농어  
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추천한 각 1명

다. 귀농인단체·농업인단체 대  
표 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 등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를 소  
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삭 제>

-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심의
- 2.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추진
- 3.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 4. 귀농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협의·선정
-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6조(회의) 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삭 제>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하동군 고시 제2019 - 57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6.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484 외 15필지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02, 815-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484	2019 0416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68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670-99	2019 0416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637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1178	2019 0416		2009 0702	사천시의 곤명면과 하 동군의 북천면의 첫자 를 혼용하여 곤북로 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418-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748	2019 0416		2007 0618	황천과 옥종의 경계지 점에 있는 재로서 재 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 서 돌고지재라고한 옛 지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산18-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338-13	2019 0416		2007 0618	악양면 등촌리에서 청 암면 목계리로 넘어가 는 회남재라는 고개이 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통정리 732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구청길 69	2019 0416		2008 0402	구청이라는 자연마을이 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77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길 62-4	2019 0416		2007 0618	동매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185-7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길 12-10	2019 0416		2007 0618	동매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508-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산길 3	2019 0416		2009 0302	동산골이라는 옛지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552-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1길 9-7	2019 0416		2007 0618	매화꽃이 흐르는 계곡 에서 유래된 자연마을 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324-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165	2019 0416	2007 0618	신대리 윗쪽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4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길 48-2	2019 0416	2008 0402	마을앞 뚝뒀가 닭이 알 을 품고 있는 격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5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길 46	2019 0416	2008 0402	마을앞 뚝뒀가 닭이 알 을 품고 있는 격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218-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38-6	2019 0416	2007 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 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산45-8, 산 45-10, 785, 786, 787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129-6	2019 0416	2007 0618	정동과 상신의 자연마 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12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해안길 29	2019 0416	2009 0302	해변을 끼고있는 마을 의 의미를 유지코자 중평해안길로 명명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58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김중*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하동군 양보면 구청길	

장소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765-6(구) (인접 백련리 156-3(목))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18㎡ (또는 m³)

목적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증축(양성화) 건축물 일부를 점용

기간  
5년 (2019. 4. ~ 2023. 3. )

점용 · 사용의 유형

기타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4월 17일

##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59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입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군산시 동지곡길 53	

장소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1340(구), 인근지번: 화개면 용강리 200(답)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190m<sup>2</sup>

(또는

m<sup>3</sup>)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 3. 1. ~ 2023. 3. 1.

점용 · 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하 동 군 수 (인)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9-60호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하동야생차문화축제조직위원회		
생년월일	613-82-13651		
하천명칭	화개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897(천), 655(천) (인근: 화개면 운수리 664(대))		
점용면적	300㎡		
최초허가일	2019년 4월 18일		
점용기간	2019년 4월 25일 ~ 2019년 5월 17일까지(23일간)		
허가조건	<p>1. 불입 허가조건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p> <p>2. 행사장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 가 조 건

1. 본 공사의 시행은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5.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6. 점용허가 구간 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 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7. 일시 점용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8.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9.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끝.

하동군 고시 제 2019 - 61호

##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9.

# 하 동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하동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상신흥지구, 청수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가. 상신흥지구 :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499번지 일원(217필지/ 78,459㎡)
  - 나. 청수지구 :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569번지 일원(159필지/ 70,574㎡)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 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가. 토지현황조사
    - 1)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 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2)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필지별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한다.
      - (1) 토지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 (5) 지하시설(구조)물 등 현황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현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지적재조사측량

기초측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설치</li> <li>- 위성측량 및 토탈스테이션 측량의 방법으로 실시</li> </ul>
세부측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측량, 토탈스테이션측량 등의 방법으로 실시</li> <li>-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함</li> <li>- 경계점표지 설치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li> <li>-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li> </ul>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055-880-2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4>

허가번호 제 2016-6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055-883-1901	사업자등록번호 614-82-01328
	주소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161 m <sup>2</sup>	743 m <sup>2</sup>
목적	진출입로	진출입로 및 주차장부지
기간	2018. 12. 3. ~ 2023. 12. 3.	2018. 12. 3. ~ 2023. 12. 3.
변경사항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b>하여야 합니다.</li> <li>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li> <li>3. 허가면적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li> <li>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b>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b> 하여야 합니다.</li> <li>5. 점사용기간이 만료 2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점용·사용이 끝나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li> </ol>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

2019년 4월 25 일

## 하 동 군 수 (인)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b>하 천 점 용 허 가 증</b>			
제2019-64호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601호		
성명(법인명)	서현건설(주) (대표: 이태진)		
법 인 번 호	301-81-27712		
하 천 명 칭	북천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북천면 직전리 527-1		
점 용 면 적	951.65㎡		
최 초 허 가 일	2019. 4. 29.		
점 용 기 간	2019. 4. 29. ~ 2021. 10. 15.		
허 가 조 건	붙임 참조		
<p>「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4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하 동 군 수 [인]</b></p>			
<p>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 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제방 인접 공작물 설치 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하천법 95조에 의거 하천 점용 허가 취소 및 고발 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65호

##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30.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17-21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4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20 외 134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3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9-67호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하동군수(안전총괄과)		
법 인 번 호	614-83-00025		
하 천 명 칭	화개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화개면 운수리 897(천), 1005(천)		
점 용 면 적	500㎡		
최 초 허 가 일	2019년 4월 30일		
점 용 기 간	2019. 4. 30. ~ 5. 24.		
허 가 조 건	붙임 참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 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제방 인접 공작물 설치 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하천법 95조에 의거 하천 점용 허가 취소 및 고발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69호

#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및 동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사업목적 : 농촌 소재지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3. 위 치 : 하동군 화개면 탐리 일원
4. 총사업비 : 6,500,000천원(국비4,550,000천원, 지방비1,950,000천원)
5.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향문화센터 건립, 그린나래광장 조성
  - 지역경관개선
    - 경관 인도교, 화개교 경관조명, 길잡이 네트워크 1식
    - 화개 테마거리 1식(변경)
  - S/W(지역역량강화)사업 부분
    - 교육,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변경)
6.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16년 12월 ~ 2019년 12월(당초: 2017년 12월까지)
8. 관계도서배치 :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48)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70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이영*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장소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88(구) (인근 : 화개면 부춘리 312-4(답))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39㎡

(또는 m³)

목적

근린시설 진출입로

기간

5년 (2019. 5. 7. ~ 2023. 5. 7.)

점용·사용의 유형

기타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5월 7일

##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71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하 계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장소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987-1(구) (인근: 옥종면 병천리 852-1(대))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4.68㎡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5년 (2019. 5. 9. ~ 2023. 5. 9.)

점용·사용의 유형

기타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5월 9일

하 동 군 수 (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9-73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김광*	주소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소하천명		대덕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1241-4(인근 929-1)		
	면적	280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m <sup>2</sup>
	기간	2019.5.10.~2023.5.10.		
	목적 및 사유	진입로 설치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500호

##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4월 26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제안 이유 : 호적법 폐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4조(기준) 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나.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정비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하동군수 (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으로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

- 주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292 / FAX 055-880-2279

- 붙임 : 1.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li> <li>○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20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마다 3,000원</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마다 3,000원</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li> <li>·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ul> </li> </ul>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1회: 500원</li> <li>·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li>○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2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150원</li> </ul> </li> <li>○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1,500원</li> <li>·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9 - 517호

##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01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조례 일부 내용 수정 : 제4조(지원사업) 관련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 : 20만원 ⇒ 30만원
  - 나. 용어의 정확성 및 관계법령 변경으로 인한 조례 정비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행복과, 전화 055-880-2343, FAX 055-880-2349, e-mail siva25@korea.kr)에 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6.25전쟁”을 “6·25전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6.25전쟁”을 “6·25전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1964년 7월 18”을 “1964년 7월 18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25전쟁”을 “6·25전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제2조제1항제5호 중 “6.25전쟁”을 “6·25전쟁”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복리증진”을 “그들의 복리증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6.25전쟁</u> 및 <u>월남전쟁</u>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u>6.25전쟁</u> ----- ----- ----- ----- ----- ----- ----- ----- ----- -----</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① ----- ----- ----- ----- -----</p>
<p>1. <u>6.25전쟁</u>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p>	<p>1. ----- <u>6.25전쟁</u> ----- -----</p>
<p>2. 「<u>병역법</u>」 또는 「<u>군인사법</u>」에 따른 현역복무 중 <u>1964년 7월 18</u>부터 <u>1973년 3월 23</u>일까지 사이에 <u>월남전쟁</u>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p>	<p>2 ----- ----- <u>1964</u> <u>년</u> ----- <u>7월</u> ----- <u>18일</u> ----- ----- -----</p>
<p>3. <u>6.25전쟁</u>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p>	<p>3. ----- <u>6.25전쟁</u> ----- ----- -----</p>
<p>4. <u>6.25전쟁</u>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u>소년지원병</u> 및 <u>한창기</u></p>	<p>4. <u>6.25전쟁</u>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u>소년지원병</u> 및 <u>한창기</u></p>

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②·③ (생략)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금 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

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  
-----  
----- 6.25전쟁  
-----  
-----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  
-----  
-----  
-----  
-----  
-----  
-----  
-----  
----- 사  
-----  
----- 사람은 -----.

제4조(지원사업)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  
-----  
----- 30만원 -----
- 3 .

경유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  
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그들의 복  
리 증 진  
-----  
-----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생 략)

③ 다만, 서식의 첨부서류에 대하  
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  
민등록등본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  
----- 사람  
은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정  
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한 정보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  
다.

하동군 공고 제541호

##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2. 제안 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내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주요 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등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보다 우선 적용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 완화(안 제4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 가능

-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표시 방법 규정

-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에서는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 가능
-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높이, 면적, 보도의 경계선 이격거리
- 특화사업 홍보에 필요한 광고 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농업소득과전화 055-880-2733, FAX 055-880-2719, e-mail runjhs@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제정(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하동야생녹차의 특화 사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특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 완화)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



는 물건에 표시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특구에서는 해당업소 등의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다.
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2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6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특구에서는 특화사업 홍보에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과 같은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9 - 호

#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폐기)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23.

## 하 동 군 수

- 1. 공인 사용(폐기)일 : 2019. 4. 23.
- 2. 신조 및 폐기사유 :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민원전용 공인 신조등록
- 3.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글씨체 및 규격	인영	비고
신 조	민원사무전용 하동군보건소장인	한글전서체 3.0cm 정사각형		

하동군 공고 제2019 - 494호

##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하동군에서는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공관광 확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22일

하 동 군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근거 :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지원조건
  - 1) 관내 당일 관광 또는 숙박이 포함된 여행 일정을 하동군(관광진흥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업체(학교)로서,
  - 2) 타 지역 내국인·외국인 단체관광객(내국인 30인, 외국인 10인이상) 수학여행단 50인이상, 기차여행(4인이상), 항공관광(5인이상) 유치여행사로 아래 조건의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 공중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 관내에 소재한 음식점
  - ※ 내·외국인 동반인 경우 내·외국인 총원 30인 이상인 경우에 각각 기준에 따라 지급
  - ※ 기차관광의 경우 관내 기차역을 통해 하동군 관내를 관광하는 상품에 해당
  - ※ 항공관광의 경우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30인 이상으로 항공관광 상품을 이용할 경우 중복지급 가능

3) 관광지(시설) 및 숙박시설 확인

- 당일관광 : 관내 <유료관광지(시설) 1개소 + 식당 1식 이상>
- 숙박관광 : 관내 <유료관광지(시설) 2개소 + 식당 2식 이상 + 숙박 1박 이상>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첨부(간이영수증 불가)

○ 지원기준 및 지원액

구 분	지원기준	지원규모(1인당) (원)			지원조건
		당일	1박	2박이상	
내국인 단체	30명이상	-	10,000	15,000	○ 당일관광 유료관광지(시설)(1), 음식업소(1) 이용
외국인 단체	10명이상	-	15,000	25,000	
수학 여행단	50명이상	-	5,000	10,000	
기차여행	4인이상	5,000	10,000	15,000	○ 숙박관광 유료관광지(시설)(2), 음식(2)숙박업소(1) 이용
항공관광	5인이상	5,000	10,000	15,000	

- 지원 방법 : 보상제(여행사에 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안내원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투어
- 하동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관내 관광일정을 하동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관광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관광
-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완전 배제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 단체관광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시작일 7일 전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단체관광계획서, 여행일정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E-mail, 직접방문
  - 우 편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관광진흥과(슬로시티담당)
  - 팩 스 : 055)880-2659(팩스 전송 시 반드시 전화 확인)
  - 이메일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055)880-2378

###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 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지출완료 되어야 하므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출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관광진흥과(슬로시티담당)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에 지급
- 구비서류
  - 【서식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원본) 1부
  -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

- 【서식3】 관광객 숙박확인서 1부(원본)
- 【서식4】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1부
- 【서식5】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1부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원본)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사용불가)
-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결제 영수증
- 기차표 또는 항공권 혹은 결제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 ※ 유의사항
  - 여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념하시어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람.

## 기타사항

- 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나.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하동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다.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 마.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함.
- 바. 숙박업소 등과 담합하여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에서 완전 배제함.
- 사.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시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 단체 관광 계획서

여행사 일반사항

여행사명		대표자	
업체주소	( 8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 관광 계획

[단위 : 명]

관광기간	방문객수		주요 관광지	인 솔 자		비 고
	내국인	외국인		성 명	연락처	

수학여행 계획

[단위 : 명]

학교명	인원 수	주요관광지	인 솔 자		비 고
			성 명	연락처	

우리 여행사의 하동군 단체관광계획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여행업체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여행일정표 1부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1부

※ 공지사항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b>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b>								
<input type="checkbox"/> <b>여행사 일반사항</b>								
여행사명		대표자						
업체주소	(☎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b>관광객 유치현황</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명]</span>								
국적	숙박일자	숙박 시설명	숙박객수			관광지 (2개소 이상)	인솔자	
			계	관광객	여행사 관계자		성명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b>수학여행 관광객 유치현황</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명]</span>								
학교명	숙박일자	숙박업소명	숙박객수				비고	
			계	학생	교사	여행사관계자		
※ 여행자명단 기재사항이 부실한 경우에는 관광객 10명당 1명 기준으로 여행사 관계자로 간주합니다.								
<input type="checkbox"/> <b>보상금신청액 : 금                      원</b>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여행업체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b>하동군수 귀하</b>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							
	2. 숙박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여행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 각1부.							
	3. 관광지 방문 증빙 내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1부.							
	5.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1부.							
6. 통장 사본 1부								
※ 공지사항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동군 관광 일정 계획 “예시”

## □ 1박 2일

		시 간			관 광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 박 2 일	첫 째 날	08:00	12:00	240	○ 서울 → 하동읍(하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12:00	13:00	60	○ 중식(식당 이름 기재)	
		13:00	15:00	120	○ 삼성궁 이동 및 관람	
		15:00	16:00	60	○ 지리산생태과학관, 금오산 레포츠시설, 구제봉	
		16:00	17:00	60	○ 하동읍 이동	
		17:00	~		○ 석식 및 취침 (식당 이름 및 숙박업소 기재)	
	둘 째 날	07:00	08:00	60	○ 조식(식당 이름 기재)	
		08:00	09:00	60	○ 이동(화개)	
		09:00	11:00	120	○ 화개장터	
		11:00	13:00	120	○ 쌍계사 / 불일폭포 / 대도파라다이스	
		13:00	14:00	60	○ 중식 및 휴식(식당 이름 기재)	
		14:00	16:00	60	○ 최참관댁 / 평사리 공원 / 차문화센터 / 토지문학관	
		16:00	18:00	120	○ 송림공원 / 하동포구공원	
		18:00	~		○ 하동출발	

□ 당일

	시 간			관 광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당 일	07:00	11:00	240	○ 서울 → 하동읍(하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11:00	12:00	60	○ 하동송림공원 / 하동포구공원	
	12:00	13:00	60	○ 중식(식당 이름 기재)	
	13:00	14:00	60	○ 화개장터	
	14:00	16:00	120	○ 쌍계사 / 불일폭포 / 대도파라다이스 / 토지문학관	
	16:00	17:00	60	○ 최참판댁 / 평사리공원 / 차문화센터 / 구재봉	
	17:00	17:30	30	○ 하동버스터미널로 이동	
	17:30	~		○ 하동출발	

※ **유료관광지** : 최참판댁(박경리문학관), 쌍계사, 지리산생태과학관, 삼성궁(청학동)

[별지 제3호 서식]

### 관광객 숙박확인서

여행사명		대표자			
업체주소	( ㉠ )				
관광객 숙박현황			[단위 : 명]		
국 적	숙박일자	숙 박 객 수			비고
		계	관광객	여행사관계자	
<p>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숙박업소대표 귀하</p>					
<p>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 숙박업소명 주 소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p>					
※ 공지사항	<p>1.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숙박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붙임 : 숙박업소 이용 증빙서 1부(카드결제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 제5호 서식]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사진

<붙임1> 숙박업소 이용 증빙서

증빙서류

증빙종류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p>증빙서류(원본) 붙이는 곳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p>	

<붙임2>

## 유료관광지 방문확인서

관광지명 :

증빙서류(입장권 또는 영수증 첨부)

붙이는 곳

하 동 군 청 귀하



<붙임3>

# 기차·항공 이용확인서

증빙서류(표 또는 영수증 첨부)

붙이는 곳

하 동 군 청 귀하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하동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단체의 금융계좌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19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19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2019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19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5>

# 하동군 유료관광지 현황

■ 쌍계사 입장료 (055-883-7019)

- 성인 2,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500원
- 30인 이상 단체 : 성인 2,200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 등 400원

■ 삼성궁 입장료 (055-884-1279)

- 성인 7,000원, 청소년·군인 4,0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3,000원
- 30인 이상 단체 : 성인 6,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 어린이 등 2,500원

■ 최참판댁 입장료 (055-880-2960)

-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1,0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등 500원

■ 지리산 생태과학관 입장료 (055-880-2954)

- 성인 1,000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6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800원, 청소년·군인 600원, 어린이 등 400원

※ 최참판댁과 연계이용 시 입장료

- 성인 2,6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1,4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400원, 어린이 등 800원

■ 하동군 관광안내소

- 화개장터 관광안내소 : 055-880-5722
- 청암 관광안내소 : 055-882-5379
- 악양 관광안내소 : 055-880-2950

※ 구재봉 자연휴양림 : 070-8855-8010~8011

<붙임6>

# 하동군 유료이용시설 현황

## ▣ 하동레일파크 이용료 (055-882-2244)

하절기		동절기		비고
월요일~목요일	금,토,일,공휴일 전날, 공휴일	월요일~목요일	금,토,일,공휴일 전날, 공휴일	
2인승 : 25,000	2인승 : 30,000	2인승 : 20,000	2인승 : 25,000	
4인승 : 30,000	4인승 : 35,000	4인승 : 25,000	4인승 : 30,000	

### ※ 할인

- 50% 할인 : 국가유공자, 하동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 30% 할인 : 하동군민, 장애인
- 20% 할인 : 2인승 10대 이상, 4인승 8대 이상을 한 회차에 동시 이용

## ▣ 금오산 짚와이어 이용료 (055-884-7715)

	평일	주말 및 공휴일	비고
성인	40,000	45,000	
청소년 (14세이상~19세이하)	35,000	40,000	
어린이 (8세이상~13세이하)	30,000	35,000	

하동군 공고 제2019-499호

##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9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25일

### 하 동 군 수

1. 제 목 :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9. 4. 25. ~ 5. 10.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교부 및 기타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055-880-2564)

##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기분	납부자명	납부자 번호	차량번호	부과금액 (원)	송달주소	반송사유	비 고
1	20191	강영*	630815** *****	49부52**	4,520	하동군 청암 면 하촌길 *~**	이사감	
2	20191	임현*	800516** *****	97거26**	5,070	하동군 옥종 면 옥수로 *	이사감	
3	20191	박기*	700210** *****	97나15**	6,700	하동군 하동 읍 소재1길 2*	반송함 투여	
4	20191	정귀*	741202** *****	91더43**	7,490	하동군 적량 면 황금길 1**~**	이사감	
5	20191	김수*	640111** *****	94로01**	7,860	하동군 진교 면 금오산길 1**~**	이사감	
6	20191	김해*	600111** *****	17도65**	9,680	하동군 하동 읍 경서대로 7*	수취인불명	
7	20191	신철*	660330** *****	13부73**	11,460	하동군 고전 면 조간너리 길 1*	수취인미거주	
8	20191	김봉*	550305** *****	07버81**	11,460	하동군 황천 면 문화1길 1*	이사감	
9	20191	김경*	830528** *****	90누22**	11,960	하동군 악양 면 상신대길 9*~*	주소불명	
10	20191	김경*	830528** *****	97나93**	12,100	하동군 악양 면 상신대길 9*~*	주소불명	
11	20191	임현*	590620** *****	경남80루 90**	12,220	하동군 진교 면 평당길 *	이사감	
12	20191	이영*	691126** *****	17머04**	13,050	하동군 하동 읍 중서1길 2*	이사감	
13	20191	신철*	660330** *****	경남80두 31**	13,900	하동군 고전 면 조간너리 길 2*	수취인미거주	
14	20191	김윤*	760813** *****	48어10**	14,540	하동군 청암 면 청학로 2***~**	이사감	

15	20191	임현*	800516** *****	03루86**	14,620	하동군 옥종 면 옥수로 *	이사감	
16	20191	하종*	800510** *****	33루32**	15,770	하동군 하동 읍 부두길 1*	이사감	
17	20191	주식회사 **이앤씨	171311** *****	14루34**	16,300	하동군 진교 면 진교시장 길 1*-**	수취인불명	
18	20191	이기*	640111** *****	97소17**	16,660	하동군 진교 면 금오산길 1**-*	이사감	
19	20191	정미*	610220** *****	89주66**	16,900	하동군 횡천 면 상월길 1*	수취인불명	
20	20191	김성*	720213** *****	93다87**	17,530	하동군 금남 면 소송음달 길 1*	이사감	
21	20191	정찬*	800912** *****	84서92**	17,530	하동군 금성 면 연막중앙 길 1*-*	이사감	
22	20191	김경*	830528** *****	97거26**	17,530	하동군 악양 면 상신대길 9*-*	주소불명	
23	20191	박명*	711128** *****	90누14**	17,530	하동군 악양 면 신흥길 1**-*	수취인불명	
24	20191	노철*	710923** *****	84서68**	17,530	하동군 청암 면 청학로 8**-*	이사감	
25	20191	강서*	680727** *****	97머98**	17,530	하동군 하동 읍 화심길 1**	이사감	
26	20191	김동*	881002** *****	83보53**	18,090	하동군 하동 읍 하마길 1*	수취인불명	
27	20191	강달*	621104** *****	81저92**	18,140	하동군 고전 면 매자신방 길 2**	수취인부재	
28	20191	조기*	490824** *****	경 남 8 즈 161**	18,140	하동군 고전 면 잔너리길 96-*	이사감	
29	20191	정용*	450322** *****	96우60**	18,140	하동군 금남 면 대도길 1**	수취인불명	
30	20191	박경*	610715**	부 산 8 0 로		하동군 금남	수취인불명	

			*****	93**	18,140	면 진정2길 5*~**	
31	20191	정한*	620225** *****	82오35**	18,140	하동군 금남 면 한재길 1*_*	수취인불명
32	20191	백대*	571116** *****	97너45**	18,140	하동군 금성 면 나팔중앙 길 2*_*	이사감
33	20191	최정*	691215** *****	94우75**	18,140	하동군 금성 면 산업로 4**	이사감
34	20191	강영*	621101** *****	경 남 7 모 319**	18,140	하동군 악양 면 입석길 3*~*	수취인불명
35	20191	정충*	770201** *****	경 남 80 무 17**	18,140	하동군 옥종 면 북방우회 길 4*~**	수취인불명
36	20191	오태*	570805** *****	97나17**	18,140	하동군 적량 면 안성길 3*	수취인불명
37	20191	오태*	570805** *****	경 남 7 느 152**	18,140	하동군 적량 면 안성길 3*	수취인불명
38	20191	안현*	690825** *****	95로44**	18,140	하동군 진교 면 하평안길 *	이사감
39	20191	김외*	660720** *****	경 남 81 무 22**	18,140	하동군 청암 면	수취인불명
40	20191	전유*	561113** *****	경 남 81 무 16**	18,140	하동군 하동 읍 나루터길 1*	이사감
41	20191	이응*	520420** *****	97나25**	18,140	하동군 하동 읍 나루터길 1*~**	이사감
42	20191	김영*	650310** *****	96무71**	18,140	하동군 하동 읍 부두길 4*	이사감
43	20191	정덕*	760901** *****	84나72**	18,140	하동군 하동 읍 산복1길 2*~*	이사감
44	20191	김영*	701020** *****	97마55**	18,140	하동군 하동 읍 선장길 1*	수취인불명
45	20191	전원*	690418** *****	97나55**		하동군 하동 읍 송림1길	수취인불명



					18,140	1-*		
46	20191	김영*	460813** *****	97나15**	18,140	하동군 하동 읍 시장1길 2*	이사감	
47	20191	이재*	821231** *****	97오82**	18,140	하동군 하동 읍 화심길 1**	이사감	
48	20191	정명*	670407** *****	90서66**	18,140	하동군 횡천 면 인동길 1*	이사감	
49	20191	성호*	680720** *****	38서50**	18,690	하동군 금성 면 산업로 4**	이사감	
50	20191	손낙*	820419** *****	47주51**	19,280	하동군 하동 읍 남당길 4*-*	이사감	
51	20191	이정*	520109** *****	22소24**	19,350	하동군 금성 면 산업로 4**	이사감	
52	20191	문지*	540329** *****	42더18**	19,350	하동군 하동 읍 군청로 2*	이사감	
53	20191	최말*외1 인변진*	751027** *****	52거94**	19,350	하동군 하동 읍 부두길 2*-*	이사감	
54	20191	문지*	880526** *****	01보83**	19,350	하동군 하동 읍 연화길 8-**	주소불명	
55	20191	장동*	550127** *****	66라35**	19,360	하동군 고전 면 노화길 *	이사감	
56	20191	박금*	721003** *****	경 남 47 나 39**	19,360	하동군 고전 면 백석길 1*	이사감	
57	20191	농업회사 법인(주) ***농부	194711** *****	47저68**	19,360	하동군 고전 면 지소1길 3*	수취인불명	
58	20191	유한회사 **건설	194714** *****	97나19**	19,360	하동군 금남 면 섬진강대 로 9**-*	수취인불명	
59	20191	이영*	760105** *****	51고39**	19,360	하동군 금성 면 고포마을 길 1**	이사감	
60	20191	이옥*	670725** *****	45보35**	19,360	하동군 금성 면 금성로 52*	이사감	

61	20191	이종*	650109** *****	65다45**	19,360	하동군 북천 면 옥단로 1**-*	수취인불명	
62	20191	김기*	760619** *****	17마77**	19,360	하동군 적량 면 황금길 4*	주소불명	
63	20191	박형*	680115** *****	54소96**	19,360	하동군 진교 면 대전방길 4*	이사감	
64	20191	김덕*	460520** *****	17나71**	19,360	하동군 진교 면 사기아름 길 4*	이사감	
65	20191	주영*	490226** *****	53고04**	19,360	하동군 진교 면 선창길 1**-*	이사감	
66	20191	김홍*	590620** *****	65거35**	19,360	하동군 진교 면 평당길 *	이사감	
67	20191	최관*	630401** *****	97마94**	19,360	하동군 하동 군 북천면 상촌길 1**-*	반송함투여	
68	20191	백*전력 주식회사	134911** *****	41두57**	19,360	하동군 하동 읍 군청로 1**-*	이사감	
69	20191	봉성*	731122** *****	37누41**	19,360	하동군 하동 읍 동광길 1**-*	수취인불명	
70	20191	김기*	740311** *****	55조28**	19,360	하동군 하동 읍 서동길 *	수취인불명	
71	20191	박금*	580909** *****	35소47**	19,360	하동군 하동 읍 소재2길 1**-*	이사감	
72	20191	김영*	460813** *****	64소77**	19,360	하동군 하동 읍 시장1길 2*	이사감	
73	20191	이인*	700325** *****	89버83**	19,360	하동군 하동 읍 중앙2길 6**	수취인불명	
74	20191	김혜*	580326** *****	79버72**	19,360	하동군 하동 읍 청년회관 길 14**	이사감	
75	20191	오동*	700417** *****	19주46**	19,360	하동군 화개 면 쌍계로 2**	이사감	

76	20191	오영*	540520** *****	21우42**	19,360	하동군 횡천 면 구학길 1*~**	이사감	
77	20191	정창*	751120** *****	82구41**	19,360	하동군 횡천 면 문화1길 *	이사감	
78	20191	**건설주 식회사	195211** *****	76루96**	19,990	하동군 진교 면 경충로 1***	수취인불명	
79	20191	김중*	610122** *****	경 남 81 무 35**	20,020	하동군 화개 면 목압길 3*	이사감	
80	20191	주식회사 **이앤씨	171311** *****	88저17**	20,380	하동군 진교 면 진교시장 길 1*~**	수취인불명	
81	20191	(주)우* 산업	194711** *****	21나87**	20,380	하동군 진교 면 진양로 2**~**	이사감	
82	20191	**노조하 동지회 (대표:신 **)	610302** *****	72루39**	22,520	하동군 하동 읍 군청로 2*	수취인불명	
83	20191	**건설 (주)	191111** *****	96도42**	22,530	하동군 진교 면 민다리길 6*~*	수취인불명	
84	20191	정행*	590420** *****	86거78**	22,920	하동군 금남 면 조금1길 4*~**	이사감	
85	20191	김창*	680429** *****	72도38**	23,370	하동군 금성 면 연막윗길 1*~*	이사감	
86	20191	이충*	541213** *****	96버84**	23,650	하동군 금남 면 대도길 1**	이사감	
87	20191	주식회사 석*	204611** *****	47버98**	23,930	하동군 금성 면 새동네길 6*~*	이사감	
88	20191	권은*	650227** *****	68로50**	24,180	하동군 금남 면 태봉길 1*~*	수취인불명	
89	20191	이정*	631112** *****	부 산 8 라 987**	24,200	하동군 고전 면 궁단로 5~**	이사감	
90	20191	이승*	650624** *****	65가32**		하동군 고전 면 월진길	이사감	

					24,200	30-*		
91	20191	김주*	691116** *****	85거03**	24,200	하동군 고전 면 하동읍성 로 5**	수취인미거주	
92	20191	정준*	581105** *****	65노24**	24,200	하동군 금남 면 달구목길 2*-*	이사감	
93	20191	유말*	680606** *****	경 남 70 가 15**	24,200	하동군 금남 면 사궁길 *	이사감	
94	20191	유한회사 **건설	194714** *****	97나19**	24,200	하동군 금남 면 섬진강대 로 9**-*	수취인불명	
95	20191	이수*	760828** *****	93누99**	24,200	하동군 금남 면 수문마을 길 1**	이사감	
96	20191	조성*	591110** *****	57노14**	24,200	하동군 금성 면 금성로 57*	이사감	
97	20191	최정*	691215** *****	66모27**	24,200	하동군 금성 면 산업로 4**	이사감	
98	20191	정상*	760219** *****	97거22**	24,200	하동군 금성 면 산업로 4**	이사감	
99	20191	신*건설 주식회사	150111** *****	90어77**	24,200	하동군 금성 면 산업로 7**	이사감	
100	20191	(주)석*	204611** *****	95고35**	24,200	하동군 금성 면 새동네길 6*-*	이사감	
101	20191	최현*	721202** *****	04라72**	24,200	하동군 악양 면 신흥길 1**	이사감	
102	20191	김일*	540414** *****	64소30**	24,200	하동군 악양 면 중기길 9*	이사감	
103	20191	(주)동* 산업	614810** *****	경 남 8 코 284**	24,200	하동군 옥종 면 미산길 *	이사감	
104	20191	한국**협 회경남** 수유	194771** *****	97가36**	24,200	하동군 옥종 면 세종대실 로 5**-**	수취인불명	
105	20191	(주)풍* 산업	613813** *****	경 남 71 라 25**	24,200	하동군 옥종 면 옥단로 8**-*	이사감	
106	20191	(주)동*	194611**	97거21**		하동군 진교	수취인불명	

			*****		24,200	면 경충로 1***	
107	20191	(주)동*	194611** *****	97거90**	24,200	하동군 진교 면 경충로 1***	수취인불명
108	20191	(주)경* 아스콘	613813** *****	경 남 8 2 가 15**	24,200	하동군 진교 면 달구지길 9*-**	이사감
109	20191	(주)경* 아스콘	613813** *****	경 남 8 2 가 26**	24,200	하동군 진교 면 달구지길 9*-**	이사감
110	20191	소철*	840124** *****	11나38**	24,200	하동군 진교 면 상평1길 1*	이사감
111	20191	합자회사 ****농업 회사	614810** *****	경 남 8 1 무 16**	24,200	하동군 진교 면 송원리	수취인불명
112	20191	소철*	690825** *****	84너37**	24,200	하동군 진교 면 하평안길 *	이사감
113	20191	박진*	500309** *****	65다29**	24,200	하동군 청암 면 사동길 4*-*	이사감
114	20191	조외*	610910** *****	64머98**	24,200	하동군 청암 면 청학로 2***-**	이사감
115	20191	한달*	290927** *****	10가59**	24,200	하동군 청암 면 청학로 8**	이사감
116	20191	정만*	670323** *****	경 남 5 나 698**	24,200	하동군 하동 읍 경서대로 2**-*	이사감
117	20191	이은*	711010** *****	경 남 8 1 무 17**	24,200	하동군 하동 읍 경서대로 2**-*	수취인불명
118	20191	반맹*	630420** *****	경 남 4 7 나 20**	24,200	하동군 하동 읍 비파리	수취인불명
119	20191	이진*	850614** *****	42더14**	24,200	하동군 하동 읍 산복1길 1**-*	이사감
120	20191	김타*	600810** *****	10수56**	24,200	하동군 하동 읍 섬진강대 로 2***-*	이사감
121	20191	**건설 (주)	614810** *****	경 남 8 1 무 20**		하동군 하동 읍 소재1길	수취인불명

					24,200	1*~*		
122	20191	강경*	700830** *****	94서51**	24,200	하동군 하동 읍 시장2길 1*~*	이사감	
123	20191	강진*	631218** *****	95고28**	24,200	하동군 하동 읍 신기공항 길 1**~**	수취인불명	
124	20191	오도*	631129** *****	50어23**	24,200	하동군 하동 읍 연화길 5~*	수취인불명	
125	20191	(주)**토건	610812** *****	경남47가 62**	24,200	하동군 하동 읍 읍내리	수취인불명	
126	20191	(주)가* 조경	194711** *****	경남47가 44**	24,200	하동군 하동 읍 중앙1길 1*	이사감	
127	20191	전유*	631020** *****	05노44**	24,200	하동군 하동 읍 중앙로 9*	이사감	
128	20191	박정*	430525** *****	65나24**	24,200	하동군 하동 읍 향교1길 4*	이사감	
129	20191	이을*	700908** *****	91도42**	24,530	하동군 화개 면 쌍계로 2**	이사감	
130	20191	이성*	720221** *****	84구99**	25,390	하동군 하동 읍 경서대로 1***	주소불명	
131	20191	이정*	520109** *****	경남80두 48**	25,410	하동군 금성 면 산업로 4**	이사감	
132	20191	천상*	670106** *****	89다15**	25,410	하동군 진교 면 들포길 2**	이사감	
133	20191	명휘*	640410** *****	경남80루 30**	25,410	하동군 화개 면 부춘길 3**	이사감	
134	20191	조재*	600301** *****	81가74**	25,420	하동군 고전 면 매자신방 길 3*	이사감	
135	20191	조기*	490824** *****	경남81무 25**	25,420	하동군 고전 면 잔너리길 95~*	이사감	
136	20191	김태*	690919** *****	전남87가 25**	25,420	하동군 고전 면 재첩길 6*	반송함투여	

137	20191	김주*	691116** *****	경 남 82 나 19**	25,420	하동군 고전 면 하동읍성 로 5**	수취인미거주	
138	20191	강경*	620814** *****	97서14**	25,420	하동군 금남 면 동산길 4*	이사감	
139	20191	이철*	660301** *****	경 남 81 무 41**	25,420	하동군 금성 면 고포마을 길 8*-*	이사감	
140	20191	이병*	671113** *****	94마77**	25,420	하동군 금성 면 금성로 2**-*	이사감	
141	20191	김영*	531210** *****	전 남 89 다 18**	25,420	하동군 금성 면 내도청도 길 1**-*	이사감	
142	20191	한기*	650815** *****	87루30**	25,420	하동군 금성 면 서근속등 길 8*-*	이사감	
143	20191	최종*	600702** *****	경 남 82 거 16**	25,420	하동군 금성 면 향도길 3*-*	이사감	
144	20191	정점*	610228** *****	경 남 80 구 80**	25,420	하동군 북천 면 곤북로 1***-*	수취인불명	
145	20191	권영*	590303** *****	95머14**	25,420	하동군 악양 면 덕기길 7-**	이사감	
146	20191	강영*	621101** *****	88라59**	25,420	하동군 악양 면 입석길 3*-*	수취인불명	
147	20191	강정*	711005** *****	경 남 80 두 64**	25,420	하동군 악양 면 회남재로 5*	이사감	
148	20191	김희*	590909** *****	경 남 80 구 27**	25,420	하동군 양보 면 수척길 1*	이사감	
149	20191	김민*	650326** *****	96주32**	25,420	하동군 양보 면 원양샘골 길 8*-*	이사감	
150	20191	한창*	711002** *****	93나20**	25,420	하동군 옥중 면 옥중중앙 길 5*-*	이사감	
151	20191	조용*	640708** *****	97거52**	25,420	하동군 옥중 면 원해길 3*	이사감	

152	20191	김상*	470423** *****	80거41**	25,420	하동군 적량 면 신촌길 6-**	수취인불명	
153	20191	강권*	651027** *****	89소84**	25,420	하동군 진교 면 민다리길 1**-*	이사감	
154	20191	김영*	690820** *****	96무87**	25,420	하동군 진교 면 민다리길 4*	이사감	
155	20191	김두*	710422** *****	경 남 81 무 61**	25,420	하동군 하동 읍 군청로 8*-*	이사감	
156	20191	여태*	600915** *****	95가68**	25,420	하동군 하동 읍 부용길 8-**	수취인불명	
157	20191	오동*	681220** *****	81머29**	25,420	하동군 하동 읍 선장길 6*-*	이사감	
158	20191	김억*	700517** *****	경 북 81 노 47**	25,420	하동군 하동 읍 중앙로 1*	수취인불명	
159	20191	이정*	720508** *****	충 남 85 가 92**	25,420	하동군 하동 읍 중앙로 6*	이사감	
160	20191	강경*	700417** *****	97러83**	25,420	하동군 화개 면 쌍계로 2**	이사감	
161	20191	이일*	650120** *****	83수31**	25,420	하동군 횡천 면 인동길 9-*	이사감	
162	20191	(주)석*	204611** *****	26주58**	31,530	하동군 금성 면 새동네길 6*-*	이사감	
163	20191	(주)**지개 발	200111** *****	82버64**	32,710	하동군 대덕 로40길 5*	수취인불명	
164	20191	고성*	561228** *****	72도68**	32,710	하동군 북천 면 직전1길 4*	이사감	
165	20191	(주)금* 건설	613814** *****	96두86**	32,710	하동군 하동 읍 경서대로 1***-**	이사감	
166	20191	박정*	801206** *****	36우27**	32,960	하동군 횡천 면 구학길 4*	이사감	
167	20191	고민*	650207**	96무81**		하동군 청암	수취인불명	



			*****		33,220	면 금남길 4*-*	
168	20191	(주)석*	204611** *****	91소99**	33,870	하동군 금성 면 새동네길 6*-*	이사감
169	20191	김창*	710613** *****	32로33**	33,880	하동군 고전 면 공설운동 장로 7**-*	수취인미거주
170	20191	(유)*성 건설	609813** *****	경 남 81 무 64**	33,880	하동군 고전 면 신월길 *	이사감
171	20191	(유)*성 건설	609813** *****	경 남 81 무 64**	33,880	하동군 고전 면 신월길 *	이사감
172	20191	남*건설 (주)	194811** *****	경 남 80 루 88**	33,880	하동군 고전 면 재첩길 2*	이사감
173	20191	김민*	650326** *****	65노27**	33,880	하동군 고전 면 재첩길 5-*	이사감
174	20191	강희*	720113** *****	40수95**	33,880	하동군 금남 면 금정길 *	이사감
175	20191	(주)썬**	194611** *****	97나13**	33,880	하동군 금남 면 노량리	주소불명
176	20191	(주)하* 랜드	613813** *****	경 남 47 나 28**	33,880	하동군 금남 면 대왕골길 2*	이사감
177	20191	유말*	680606** *****	경 남 82 가 36**	33,880	하동군 금남 면 사궁길 *	이사감
178	20191	강성*	540316** *****	95서52**	33,880	하동군 금남 면 신노량길 *	주소불명
179	20191	고기*	701219** *****	27거44**	33,880	하동군 금남 면 조금1길 4*-*	주소불명
180	20191	황남*	630209** *****	경 남 70 나 13**	33,880	하동군 금남 면 한재길 1*_*	수취인불명
181	20191	(유)해* 기업	416811** *****	경 남 71 라 15**	33,880	하동군 금성 면 갈사리	이사감
182	20191	박선*,천 재*	770319** *****	54구51**	33,880	하동군 금성 면 금성로 5**_*	이사감
183	20191	(주)한* 름	194711** *****	96부10**	33,880	하동군 금성 면 금성중앙 길 1**	이사감

184	20191	강문*	690301** *****	08서10**	33,880	하동군 금성 면 연막윗길 1*-*	수취인불명	
185	20191	농업회사 (법)**팜 이엔지 (주)	194711** *****	03조44**	33,880	하동군 북천 면 상촌길 1**-*	수취인불명	
186	20191	임춘*	580621** *****	17저66**	33,880	하동군 악양 면 신흥길 1**-*	이사감	
187	20191	이병*	670502** *****	39조91**	33,880	하동군 악양 면 평사리길 5*_*	이사감	
188	20191	최재*	681209** *****	57우27**	33,880	하동군 양보 면 서제길 8*-*	이사감	
189	20191	(주)태* 이엔씨	194711** *****	79버76**	33,880	하동군 언남 20길 2*	이사감	
190	20191	이인*	711017** *****	경 남 7 모 310**	33,880	하동군 옥중 면	수취인불명	
191	20191	김의*	550220** *****	47거81**	33,880	하동군 옥중 면 내촌길 7*	이사감	
192	20191	조용*	640708** *****	92도78**	33,880	하동군 옥중 면 원해길 3*	이사감	
193	20191	하인*	880101** *****	81가74**	33,880	하동군 적량 면 공설운동 장로 3**	이사감	
194	20191	박윤*	570408** *****	87두49**	33,880	하동군 적량 면 상동산길 *	수취인불명	
195	20191	이**(주) 하동지점	613850** *****	96무70**	33,880	하동군 적량 면 한옥정길 3*-*	수취인불명	
196	20191	**영농조 합법인	613815** *****	97더65**	33,880	하동군 진교 면 구고속도 로 5**	이사감	
197	20191	(주)우* 랜드산업	194711** *****	81더71**	33,880	하동군 진교 면 구고속도 로 5**	이사감	
198	20191	주식회사 **랜드산 업	613813** *****	97나18**	33,880	하동군 진교 면 구고속도 로 5**	이사감	

199	20191	김중*	470802** *****	84나35**	33,880	하동군 진교 면 들포길 3*	반송함투여	
200	20191	정현*	820301** *****	04누84**	33,880	하동군 진교 면 상평길 1*	이사감	
201	20191	김기*	580308** *****	70너21**	33,880	하동군 진교 면 소전방길 2*	이사감	
202	20191	(주)농* 샘물	614810** *****	경 남 71 라 16**	33,880	하동군 청암 면 청학로 2***-**	이사감	
203	20191	조외*	610910** *****	96우82**	33,880	하동군 청암 면 청학로 2***-**	이사감	
204	20191	김미*	660226** *****	88저25**	33,880	하동군 하동 읍 경서대로 1***	수취인불명	
205	20191	이민*	781101** *****	71부50**	33,880	하동군 하동 읍 경서대로 2**-*	수취인불명	
206	20191	박재*	700102** *****	경 남 71 라 19**	33,880	하동군 하동 읍 경서대로 2**	수취인불명	
207	20191	박미*	611101** *****	42더14**	33,880	하동군 하동 읍 경서대로 7*	이사감	
208	20191	**정보통 신(주)	614810** *****	경 남 81 무 24**	33,880	하동군 하동 읍 군청로 5*-*	수취인불명	
209	20191	세계기독교 통일신 령협회** 교회	613827** *****	70보23**	33,880	하동군 하동 읍 동교2길 *	이사감	
210	20191	조동*	681220** *****	96무74**	33,880	하동군 하동 읍 선장길 6*-*	이사감	
211	20191	권태*	731124** *****	66수89**	33,880	하동군 하동 읍 송림2길 *	수취인불명	
212	20191	장미*	620503** *****	83서74**	33,880	하동군 하동 읍 중서1길 8-*	이사감	
213	20191	(주)가* 조경	194711** *****	경 남 81 무 28**		하동군 하동 읍 중앙1길	이사감	

					33,880	1*		
214	20191	이란*	651126** *****	86거78**	33,880	하동군 하동 읍 하마길 7*	이사감	
215	20191	오미*	591224** *****	96루64**	33,880	하동군 하동 읍 화심길 2**-*	이사감	
216	20191	오영*	540520** *****	경 남 90 자 83**	33,880	하동군 횡천 면 구학길 1*-**	이사감	
217	20191	김윤*	571203** *****	65루30**	36,290	하동군 옥중 면 돌고지로 9**_*	수취인불명	
218	20191	이상*	730518** *****	82버60**	44,170	하동군 적량 면 이정길 5*	이사감	
219	20191	사단법인 **복지발 전협의회	613821** *****	79고80**	49,350	하동군 고전 면 재첩길 6-*	수취인미거주	
220	20191	주식회사 **랜드산 업	613813** *****	97버42**	49,350	하동군 진교 면 구고속도 로 5**	이사감	
221	20191	하*토건 (주)	613850** *****	경 남 80 루 59**	51,110	하동군 금남 면 경충로 2**-*	이사감	
222	20191	(주)우* 랜드산업	194711** *****	97나16**	51,110	하동군 진교 면 구고속도 로 5**	이사감	
223	20191	우*조경 (주)	194711** *****	97나13**	51,110	하동군 진교 면 구고속도 로 5**	이사감	
224	20191	노경*	700222** *****	부 산 30 너 95**	73,110	하동군 하동 읍 송림1길 9-*	수취인불명	
225	20191	(주)한* 름	194711** *****	경 남 8 스 804**	87,130	하동군 금성 면 금성중앙 길 1**	이사감	
226	20191	동**와산 업(주)	614810** *****	경 남 7 도 441**	87,130	하동군 옥중 면 옥단로 8**-*	이사감	
227	20191	**종합건 설(주)	194711** *****	85가94**	87,130	하동군 적량 면 공설운동 장로 5*-*	이사감	
228	20191	(주)동*	194611** *****	97나99**	93,480	하동군 진교 면 경충로	수취인불명	

						1***		
229	20191	우*통상 (주)	141211** *****	경 남 99 바 91**	96,820	하동군 금남 면 섬진강대 로 9**-*	이사감	
230	20191	(주)강* 투어여행 사	195011** *****	경 남 72 바 97**	96,820	하동군 사천 읍 경서대로 5*	주소불명	
231	20191	(주)강* 투어여행 사	195011** *****	경 남 72 바 97**	96,820	하동군 사천 읍 경서대로 5*	주소불명	
232	20191	강갑*	250117** *****	경 남 7 모 235**	96,820	하동군 악양 면	주소불명	
233	20191	(주)하 ***관광	613812** *****	79버78**	96,820	하동군 진교 면 관곡리	이사감	
234	20191	노철*	710923** *****	72나35**	96,820	하동군 청암 면 청학로 8**-*	이사감	
235	20191	이명*	541019** *****	98수87**	96,820	하동군 횡천 면 경서대로 1***	수취인불명	

하동군 공고 제2019-525호

# 공 고

수산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 하 동 군 수

### 1.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사항

#### 1) 승인내역

어업별	유형별	승인신청		검 토 결 과					
				승 인		불승인		조정(축소)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계		2	13.5	2	1.5	-	-	-	-
마을어업	신규개발	-	-	-	-	-	-	-	-
	재 개발	-	-	-	-	-	-	-	-
	대체개발	-	-	-	-	-	-	-	-
양식어업	신규개발	-	-	-	-	-	-	-	-
	재 개발	1	13	1	13	-	-	-	-
	대체개발	1	0.5	1	0.5	-	-	-	-

2) 승인조건

-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 협의된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 나.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어업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 다. 승인된 수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타 어업과 분쟁이 예견·발생되는 경우 그 민원 및 어업 분쟁을 해소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라. 신규·재·대체개발시 기존어장 및 개발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망 및 폐어구 수거 등 어장청소완료를 확인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마. 신규·재·대체개발시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하며, 어류등양식(가두리식)은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양식어장은 재해대책명령(조기출하 및 어장이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 바.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 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어장면적 및 수면의 한계, 어장간의 거리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 사.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장경계구역 야간 표시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아.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장수심한계를 준수하여 신규·재개발하여야 하며, 재개발시 기존 면허구역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맞도록 어장실측, 양식어장과의 중첩, 어항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자. 정치망어업은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의거 기존어장 구역범위, 어구설치형태, 보호구역은 기존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차. 위(가~자)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하여는 상기 조건이 충족될 때 어업면허를 처분함

2. 열람기간 : 2019년 5월 2일 ~ 2019년 5월 31일 (30일간)

3. 장 소 : 하동군청 해양수산과(어업생산담당)

4. 어업면허 우선순위신청

가. 자 격 :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단,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단체)

나. 신청기간 및 장소 :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 1)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 5) 여권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055-880-2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1부. 끝.



##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 【 양식어업 】

#### ○ 재 개 발

시·군	어업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수면위치	신청면적 (ha)	승인여부	신청 도면
하동군	양식어업	살포식	새고막	진교 술상	13	승 인	1

#### ○ 대체개발

시·군	어업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수면위치	신청면적 (ha)	승인여부	신청 도면
하동군	양식어업	가두리식	어류 등	금남 대치	0.5	승 인 (조건부)	2

하동군 공고 제2019 - 534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제안이유

가. 인구 15만 미만 군 : 3국 설치 가능

나. 엑스포, 세계농업유산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 과(科) 신설(특화산업과)

다. 정부·경남도 정책 방향 및 복지서비스 강화, 농가소득 증대, 주민의 안전 및 보호, 현장민원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담당 신설

3. 주요내용

가. 3국(局) : 기획행정국(6과) · 문화환경국(5과) · 건설도시국(6과) (안 제3조)

-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 문화환경국 :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 건설도시국 :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

나. 과(科) 신설 : 특화산업과(4담당) (안 제5조)

- 녹차산업담당 : 차산업 육성 및 홍보
- 농업유산담당 : 세계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 엑스포추진담당(신설) : 엑스포 유치 및 추진 전담
- 농촌융복합담당 : 6차산업, 벤처농업육성

다. 담당 신설 : 8담당 (안 제5조, 제6조, 제12조)

- 특화산업과 엑스포추진담당 : 엑스포 유치 및 추진 전담
- 안전총괄과 통신관제담당 :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군민의 안전과 CCTV망, 통신망 연계를 위한 통신분야 통합
- 수도사업과 하수시설담당 : 하수관련 생활 불편민원 해소와 현장민원 대응 강화
-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
- 농산물유통과 로컬푸드담당 : 지역푸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주민생활지원담당(양보,북천,청암) : 복지서비스 강화

라. 담당 통폐합 : 1담당 (안 제6조)

- 민원과 민원기동대 + 안전총괄과 민방위 → 안전총괄과 민방위안전담당

마. 담당 이관

- 농촌진흥과 드론활용담당 → 농업소득과 드론활용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촌융복합담당 → 특화산업과 농촌융복합담당
- 농업소득과 녹차특작담당 → 특화산업과 녹차산업담당
- 농업소득과 농업유산담당 → 특화산업과 농업유산담당

바. 명칭 변경

-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 행정과 혁신지원담당(혁신 업무 총괄)
-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 행정과 정보화담당(통신업무 이관)
-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보건소 의약담당(감염병업무 이관)

- 농업소득과 식량작물담당 → 농업소득과 식량특작담당(특작업무 증가)
- 농업소득과 녹차특작담당 → 특화산업과 녹차산업담당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shfghdrl@korea.kr](mailto:shfghdrl@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관, 직속기관의 직급 등)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군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및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4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정책기획, 예산, 홍보, 청렴감사, 규제개혁, 대외협력 등 기획예산에 관한 사항
2. 행정, 혁신지원, 아동청소년, 인구정책, 평생학습, 정보화 등 행정에 관한 사항
3. 미래전략,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지역공동체,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 전략에 관한 사항
4. 복지기획,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정책,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 지원 등 주민행복에 관한 사항
5. 세정, 경리, 세입관리, 부동산평가, 공유재산 등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종합민원, 토지정보,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등 민원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슬로시티, 축제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진흥, 문화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3. 녹차산업, 농업유산, 엑스포추진, 농촌융복합 등 특화산업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환경지도, 자원순환, 탄소제로, 환경시설 등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5. 관리운영, 상수도, 하수도, 하수시설 등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민원, 건축행정, 복합민원 등 도

시건축에 관한 사항

- 2.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관리, 지역개발, 선진교통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 3. 안전기획, 민방위안전, 방재, 하천관리, 통신관제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
- 4. 해양개발, 어업생산, 내수면개발, 섬진강관리 등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 5.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휴양, 가로수관리 등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 6. 투자유치, 산단개발, 산단지원, 법률지원 등 산단조성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8조(보건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농업지원, 축산경영, 가축위생, 농기계지원 등 농축산에 관한 사항
2. 수출지원, 유통마케팅, 농산물가공, 로컬푸드, 디자인 등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력, 농촌관광, 농촌자원, 귀농귀촌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식량특작, 원예과수, 드론활용 등 농업소득에 관한 사항



제4장 읍·면

제1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하부행정기구) 읍·면에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행정기구인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하동군보건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하동군 일원
화개보건지소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8	화개면 일원
악양보건지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401	악양면 일원
적량보건지소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30-14	적량면 일원
횡천보건지소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3	횡천면 일원
고전보건지소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3-4	고전면 일원
금남보건지소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4	금남면 일원
금성보건지소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	금성면 일원
진교보건지소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13-1	진교면 일원
양보보건지소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25	양보면 일원
북천보건지소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5	북천면 일원
청암보건지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67	청암면 일원
옥종보건지소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28	옥종면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범왕보건진료소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8	범왕리 : 신흥, 범왕 대성리 : 단천, 의신 용강리 : 모암
부덕보건진료소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1	부춘리 : 신기, 부춘, 검두 덕은리 : 영당, 상덕, 중기
동매보건진료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56	중대리 : 상중대, 하중대 동매리 : 동매, 평촌 매계리 : 매계, 노전 등촌리 : 덕기, 중기
삼화보건진료소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415	동 리 : 명천, 이정, 동촌 서 리 : 하서, 중서, 도장골, 동점
우계보건진료소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59-19	우계리 : 공월, 원우, 상우, 서당, 괴목, 신촌
남산보건진료소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965-3	남산리 : 원곡, 상남, 하남 학 리 : 개인, 마치, 구학
전대보건진료소	하동군 횡천면 전대1길 129-1	전대리 : 전대, 죽전 애치리 : 애치, 온동
성천보건진료소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22	성천리 : 상성, 지소, 남성 범아리 : 율촌, 아정
고하보건진료소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	고하리 : 흥평, 주성, 고하, 죽전 명교리 : 명교, 일기 성평리 : 신덕, 성평
중평보건진료소	하동군 금남면 상촌마을길 23	중평리 : 중평, 상촌 대치리 : 대치
덕천보건진료소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6	덕천리 : 상삼천, 하삼천, 덕포 대송리 : 대송, 사등, 환치 계천리 : 사궁, 영천, 계항 진정리 : 진정, 조금, 금오
갑정보건진료소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7	월운리 : 월운, 갑정 관곡리 : 성평, 반석
우북보건진료소	하동군 양보면 서촌섬백이길 16	우북리 : 피파, 하성, 서촌, 동촌 통정리 : 서계 감당리 : 상쌍, 신전, 영계
방화보건진료소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15-1	방화리 : 방화, 금촌, 가평 사평리 : 사평, 모성
화정보건진료소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22-1	화정리 : 화정, 상촌 서황리 : 중촌, 기봉
목계보건진료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196	목계리 : 목계, 학동, 원목, 장고, 청학
위태보건진료소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96	궁항리 : 궁항, 오율 위태리 : 갈성, 위태 회신리 : 회신, 양지 월횡리 : 월횡, 고암
북방보건진료소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35	북방리 : 북방, 신촌, 불무 대곡리 : 추동, 한계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⑥(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④(생략)

###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실·국의 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9 - 535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가. 인구 15만 미만 군 : 3국 설치 가능

나. 엑스포, 세계농업유산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 과(科) 신설(특화산업과)

다. 정부·경남도 정책 방향 및 복지서비스 강화, 농가소득 증대, 군민의 안전 및 보호, 현장민원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담당 신설

3. 주요내용

가. 3국(局) : 기획행정국(6과) · 문화환경국(5과) · 건설도시국(6과)

-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 문화환경국 :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 건설도시국 :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

나. 과·소장의 사무분장 조정(안 제4조의 별표 1, 별표 2)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shfghdrl@korea.kr](mailto:shfghdrl@korea.kr))

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하동군 본청의 국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장·과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가. 기획예산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나. 행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다. 경제전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라. 주민행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마. 재정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바. 민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관광진흥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나. 문화체육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다. 특화산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라. 환경보호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마. 수도사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도시건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나. 건설교통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다. 안전총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라. 해양수산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마. 산림녹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바. 산단조성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제4조(사무분장) 군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5조(소장·지소장·보건진료소장)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

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군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군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사무분장) 군 보건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소장)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농축산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2. 농산물유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3. 농촌진흥과장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4. 농업소득과장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제9조(사무분장) 군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4장 읍·면

제10조(읍·면장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② 부읍·면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하며 총무업무를 겸임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1.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담당	분장 사무
정책 기획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과·소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b>군정혁신(정부혁신, 도정혁신) 업무 총괄</b>
	7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8   <b>정책실명제 계획수립 및 공표</b>
	9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10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11   외국인 정책 및 통계, 등록
	12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3   군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14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15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16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담당	분장 사무
예산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7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8   지방기금 운영 총괄
9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담당	분장 사무	
홍보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청렴 감사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계약심사

담당	분장 사무	
규제 개혁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행정절차제도 운영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담당	분장 사무	
대외 협력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	자매결연, 국·내외교류업무 총괄
	2	국제교류업무 계획 및 개발
	3	국제파견 연수공무원 관리 및 지원
	4	사회봉사단체 관리 총괄
	5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6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과장

담당	분장 사무
행정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
	2 호봉승급 및 호봉 재 확정
	3 공무원시험, 인사위원회 운영
	4 여론, 의전관리
	5 집단민원 총괄관리 및 행정구역 개편조정
	6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7 읍면 기능전환 계획수립 및 시행
	8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제관리
	9 국가기반체계 보호
	10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11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

담당	분장 사무
혁신 지원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1 복무, 보안, 공인, 당직 관리
	2 사회적혁신(사회적혁신정책, 갈등, 청년) 업무 총괄
	3 공무국외여행 허가
	4 맞춤형복지제도, 동호회, 휴양시설 운영
	5 분권, 주민자치 업무
	6 4대보험, 공무원연금, 행정공제회, 직장금고 관리
	7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 업무
9 우편물, 적십자회비, 국기계양 업무	

담당	분장 사무	
아동 청소년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1	청소년 육성계획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및 지도
	4	청소년 자립대책 및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
	5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6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무 추진
	7	요보호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지도관리
	8	결식아동 보호지원
	9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 및 관리
10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담당	분장 사무	
인구 정책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1	인구증가 종합추진계획 수립
	2	인구증가 시책추진
	3	출산장려시책 지원
	4	출산관련의료비 지원
5	저출산대책	

담당	분장 사무	
평생 학습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범 군민 교육대책 운영
	2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지원 활성화
	3	인재육성 장학재단
	4	특수대학(분교) 설립 육성
	5	교육환경 및 교육개발 기반개선
	6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
7	학교 기숙사·학원 설립 지원	



담당	분장 사무	
정보화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관리에 관한 사항	
	1	ICT신기술(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등) 활용
	2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3	군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 활성화 대책 추진
	4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5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주요서버 도입 및 운영
	6	새울행정시스템 구축 운영

경제전략과장

담당	분장 사무	
미래 전략	미래 전략사업 발굴 및 대형 민자 유치에 관한 사항	
	1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괄추진
	2	국가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한방향노화 바이오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총괄
	5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6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 총괄
	7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담당	분장 사무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
	4	지식재산권 업무
	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종합계획수립 추진
	7	시장개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기업 지원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기업유치(경제자유구역 외의 사항)	
	1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창업승인 및 사후관리
	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	외자 및 국내 기업유치 활동
	8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운영 지원
	10	투자유치 타킷기업 관리
11	개발 투자자 발굴 및 유치	

담당	분장 사무	
지역 공동체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	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
	2	사회적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3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행복생활권사업에 관한 사항
	5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총괄
	6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지역공동체사업 총괄)
	7	향토자원 조사 및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8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	

담당	분장 사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세부계획 수립
	3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4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업무
5	전원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행복과장

담당	분장 사무	
복지 기획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평가
	2	기초생활보장지원업무 계획 수립 추진
	3	생업·생활안정자금 용자 및 특별회계 관리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5	지역사업의 개발·관리 시행
	6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종합사회복지관 총괄 및 시설관리, 복지회관(목욕탕) 관리

담당	분장 사무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5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6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
	7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8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9	사랑나누미 빨래방 운영
10	알프스하동복지관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노인 복지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2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
	3	묘지설치 허가 및 분묘의 개장신고
	4	사랑의 주택 관리 및 실버식당 운영
	5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경로당
	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7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9	알프스하동복지관 운영

담당	분장 사무	
여성 정책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1	여성정책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지원
	3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대회 관련사항
	4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사업 추진
	5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지원 및 관리
	7	가족지원 및 건강가정지원 업무
	8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담당	분장 사무	
통합 조사 관리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선정, 자격관리, 근로능력판정에 관한 사항 추진
	2	복지대상자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요청
	3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5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업무
6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담당	분장 사무	
희망 복지 지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2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
	3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체계구축
	4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운영
	5	129희망콜(보건복지)센터 업무
	6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7	불우이웃돕기(공동모금회 연계), 후원·결연 업무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재정관리과장**

담당	분장 사무	
세정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대책 추진
	2	지방세 부과(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과세결정
	3	은닉세원 조사 및 발굴
	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5	지방세 구제업무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7	지방세 세무조사 및 기타 지방세 부과

담당	분장 사무	
경리	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3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4	공무원 급여 및 원천징수

담당	분장 사무	
세입 관리	세입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총괄관리
	2	자금운용 및 자금배정
	3	국도비 보조금 관리
	4	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
	5	수입증지 관리
	6	세입 과오납금 환부처리
	7	기부금품 모집 및 심의처리
	8	세입징수보고 및 세입결산
	9	지방세 체납액 징수
	10	지방세 체납처분(압류, 공매의뢰 등)
	11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기타 행정제재)
	12	결손처분
13	법원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담당	분장 사무	
부동산 평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관리,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개별필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
	2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개별주택 가격조사 계획수립
	5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업무
	6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선박·항공기) 부과
	7	개발부담금 조사·산정 및 부과

담당	분장 사무	
공유 재산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1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재물조사 실시
	2	청사·관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3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업무지도 감독
	4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 관리
	5	도·군유 잡종재산 관리
	6	관용차량 관리
7	물품출납, 보관 관리	



민원과장

담당	분장 사무	
종합 민원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민원안내 및 상담
	2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3	민원 서비스 혁신(민원24)운영
	4	민원(신고, 인·허가 등)접수 통제
	5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관리
	6	고객만족도설문조사
	7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8	기록관 운영
	9	행정정보공개 운영
	10	행정정보공동이용
11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담당	분장 사무	
토지 정보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2	지적 측량 검사
	3	KLI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4	도곽접합 등 도면 정비
	5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6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7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8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9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담당	분장 사무	
지적 재조사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3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지급·징수·공탁
	4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관리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6	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업무

담당	분장 사무	
공간 정보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	공간정보에 관한 사무
	2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
	3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무
	6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사무
	7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8	부동산 실명법 운영
9	부동산 중개업 관리	

2.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장

담당	분장 사무
관광 기획	관광종합개발계획, 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2   관광 통계 업무 추진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4   신규관광자원 개발
	5   유원시설업 및 야영업 등록관리
	6   캠핑장 등록 및 유지관리
	7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8   관광단지 트레킹·힐링공원 조성사업
	9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10   지리산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11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지원업무	

담당	분장 사무
관광 개발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관광기반 조성
	3   관광지 지정 및 개발
	4   역사이팅 레포츠 개발사업
	5   폐철도 관광자원개발사업
	6   청학동 관광지 개발사업
	7   남해안권 관광개발에 관한사항
	8   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9   케이블카 조성사업
10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관광 마케팅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관광시설 마케팅에 관한 사항	
	1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2	관광시설 마케팅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4	삼성궁,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6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
	7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유지관리

담당	분장 사무	
슬로 시티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1	슬로시티 업무 총괄 관리 및 추진
	2	관광 홍보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관광 홍보(동영상) 업무 추진
	4	관광객 안내(팸투어) 및 인센티브 업무 추진
	5	관광 여행업 업무 추진
	6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7	하동군 홍보대사 관리 업무 추진
	8	공동브랜드 관리 업무 추진
	9	관광상품 개발
	10	관광불편 민원 처리 업무 추진
	11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획 총괄
12	국내·외 관광설명회, 업무협약 추진	

담당	분장 사무	
축제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1	각종 축제관련 종합계획 추진 및 총괄지원
	2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
	3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추진
	4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추진
	5	어슬렁 캠핑 업무 추진
	6	회남재 숲길 걷기 업무 추진
	7	국제트레일 러닝 업무 추진
	8	축제 프로그램 신규 발굴

문화체육과장

담당	분장 사무	
문화예술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담당	분장 사무	
문화재	문화재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3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5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6	가야사 복원 총괄

담당	분장 사무	
체육진흥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	스포츠마케팅 사업
	2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준비
	3	국제적인 대회유치 기반조성
	4	체육진흥업무 활성화 추진
	5	하동군체육회 업무 지원
	6	생활체육 업무추진 및 동호인 단체 육성 관리
	7	체육시설 등록 신고 및 지도 감독
	8	체육공원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금남면소재지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	

담당	분장 사무	
문화 체육 시설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4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 계획 수립
	5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발
	6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7	시설물 이용 홍보 및 수강인원 관리

특화산업과장

담당	분장 사무	
녹차산업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 및 품질개선 등 경상사업
	3	녹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계획 수립 시행
	4	녹차연구소 관련 업무·사업 지원 및 점검

담당	분장 사무	
농업유산	농업유산 관리 및 소득화·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1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2	하동녹차 홍보 및 박람회 지원
	3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차문화센터 관리운영
	4	정금차밭지구단위계획
5	농업유산 연계 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	

담당	분장 사무	
엑스포추진		
	1	엑스포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엑스포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엑스포 프로그램 개발
	4	엑스포기반시설 조성
5	엑스포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마케팅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농촌융복합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2	향토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
	3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4	농산물융복합 기술개발사업
5	벤처농업 육성	



**환경보호과장**

담당	분장 사무	
<b>환경 정책</b>	<b>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수립,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b>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3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관련업무
	4	수변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협의 업무
	5	일반 및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6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
	7	개발관련 오염총량 협의 및 부하량 관리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및 관리
	9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
	10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평가
1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담당	분장 사무	
<b>환경 지도</b>	<b>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b>	
	1	환경신문고 운영관리
	2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단속 관리
	3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 지원
	4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단속 관리
	5	생활·소음진동, 생활악취 규제
	6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예방관리
	7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8	밀렵단속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
9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관리	

담당	분장 사무	
자원 순환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3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지도단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후관리
	5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사업추진
	6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운영관리
	7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담당	분장 사무	
탄소 제로	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1	탄소 없는 마을 육성
	2	환경 상품 개발(공기캔 등)
	3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
	4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5	녹색시범마을 육성 지원
6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담당	분장 사무	
환경 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전반
	2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3	소각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4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수도사업과장

담당	분장 사무	
관리 운영	상하수도 운영 총괄, 시설관리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1	상하수도 운영 총괄
	2	물관리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
	3	사용료 부과 및 징수
	4	저수조 청소업 관리

담당	분장 사무	
상수도	상수도에 관한 사항	
	1	상수도 사업계획 및 시행
	2	상수도 취수, 정수, 송배수 및 그 시설과 부속시설 유지·관리
	3	급수사항 지도·감독
	4	누수탐사 수선
	5	소규모수도시설 및 수질관리
	6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7	상수도 대행업체 운영관리

담당	분장 사무	
하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
	3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	하수관로의 정비 및 설치사업
	5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관리
	6	하수처리구역관리
	7	하수도 준설사업
	8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및 관리
	9	개인 하수처리 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10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인허가 및 관리	

담당	분장 사무	
하수 시설	하수도에 관한 사항	
	1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설치 및 운영관리
	2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사업
	3	공공하수도 관로 준설사업
	4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5	소규모 마을하수도 관리운영
	6	공공 하수도 대장작성 및 관리
	7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
	8	공공하수처리설 정밀점검, 기술진단, 약취진단 및 개선사업
	9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
	10	공공하수도 슬러지 위탁처리(단가계약)용역
	11	공공하수도 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리
	12	공공하수도 민간위탁(대행)사무 운영 관리
13	하수도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장

담당	분장 사무	
도시 계획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군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2	도시계획 입안 시행
	3	시가지 및 도시구획 정리
	4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5	도시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6	택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7	경전선 철도 이설
	8	광역권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9	개발촉진지구 지정

담당	분장 사무	
도시 개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	군 계획시설 개설계획 수립 및 편입부지 보상
	2	군 계획시설 개설공사 시행 및 감독
	3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소도읍 육성 업무 및 섬진강체육공원 조성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담당	분장 사무	
도시 재생	도시재생, 지역·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	경관개선사업 추진
	3	지역·경관 및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4	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담당	분장 사무	
건축 민원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1	건축신고 및 허가업무
	2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업무
	3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4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5	건축물 대장정비 사업추진
	6	분양대상 건축물 분양승인

담당	분장 사무	
건축 행정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빈집 정비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3	위법건축물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4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6	재해주택 관리
7	주거복지(급여)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복합 민원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2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3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준공 후 수질검사	

**건설교통과장**

담당	분장 사무	
<b>건설 행정</b>	<b>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b>	
	1	도로교통량 조사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담당	분장 사무	
<b>농업 기반</b>	<b>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b>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2	경지정리 사업
	3	농업용수 개발
	4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6	농지개량사업 시행 인가
	7	정주권 개발사업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	밭기반 조성사업
	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1	공유(도유)재산 관리(농업생산기반시설 내)	

담당	분장 사무	
도로 관리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접도구역 관리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9	도로 설해대책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담당	분장 사무	
지역 개발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3	신규마을조성사업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및 운영관리
5	금남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	

담당	분장 사무	
선진 교통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안전총괄과장**

담당	분장 사무	
<b>안전 기획</b>	<b>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b>	
	1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2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관리
	3	특별사업경찰 업무 지원
	4	각종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5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6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7	승강기 관리 업무

담당	분장 사무	
<b>민방위 안전</b>	<b>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b>	
	1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2	비상대비 대책수립 업무
	3	전시 병력동원업무 지원
	4	예비군 육성 지원
	5	사회복무요원 관리
	6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8	가로등(보안등) 설치(단, 도로개설시 제외)
	9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및 유지관리
	10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11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 사항 처리
12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방재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해 사전대비 업무
	7	풍수해 보험 업무

담당	분장 사무	
하천 관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정비·유지관리
	2	기성제 정비 및 하도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4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5	지방하천 및 소하천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6	공유(도유)재산 관리(하천구역 내)

담당	분장 사무	
통신 관제	통신 및 CCTV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인터넷 전화망 및 전화교환시스템 관리
	2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3	전자정부통합망 관리
	4	지방행정 정보망 관리
	5	무선인터넷 존 구축 및 관리
	6	행정방송 및 방송실 관리
	7	CCTV 관제센터 운영 관리
	8	방법용 CCTV 설치운영
	9	마을방송 운영관리

**해양수산과장**

담당	분장 사무	
<b>해양 개발</b>	<b>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b>	
	1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가어항 및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유수면(해면)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6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7	연안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8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10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11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담당	분장 사무	
<b>어업 생산</b>	<b>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b>	
	1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3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4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5	어선등록 및 관리
	6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7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8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b>내수면 개발</b>	<b>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b>	
	1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2	재첩 관련 산업 육성
	3	내수면 관리

담당	분장 사무	
섬진강 관리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섬진강 관련 업무 관리
	2	섬진강 유지관리
	3	국가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4	국가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5	국가하천 수변공원(4대강 사업구간) 관리
	6	공유(국유)재산 관리(하천구역 내)
	7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8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9	공유수면(국토부)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산림녹지과장

담당	분장 사무	
산림 정책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 조성 종합기획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3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4	산림분야 종묘업 등록업무
	5	산림분야 공모사업
	6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7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8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9	백두대간 지원업무

담당	분장 사무	
산림 보호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 종합대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
	3	숲 가꾸기 사업
	4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5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6	송림공원 관리
	7	입목벌채 허가, 신고
	8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9	등산로 조성 및 관리
	10	숲길 조성 및 관리
	11	공원조성 및 관리
	12	자연공원(국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13	군립공원 관리
	14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
15	섬진강재첩테마공원 조성	

담당	분장 사무	
산림 경영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1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산림입지 조사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4	산림재해대책 및 복구
	5	임도시설 및 관리
	6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7	보안림 지정 및 관리
	8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산림 휴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	수목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4	산촌생태마을 조정 및 관리

담당	분장 사무	
가로수 관리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2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3	학교숲 조성 업무

**산단조성과장**

담당	분장 사무	
<b>투자 유치</b>	<b>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및 연구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b>	
	1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및 국내기업유치 활동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타킷기업 관리
	3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투자자 발굴 및 유치
	4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학생모집 및 운영 등 지원
	5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
	6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지원
	7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원
	8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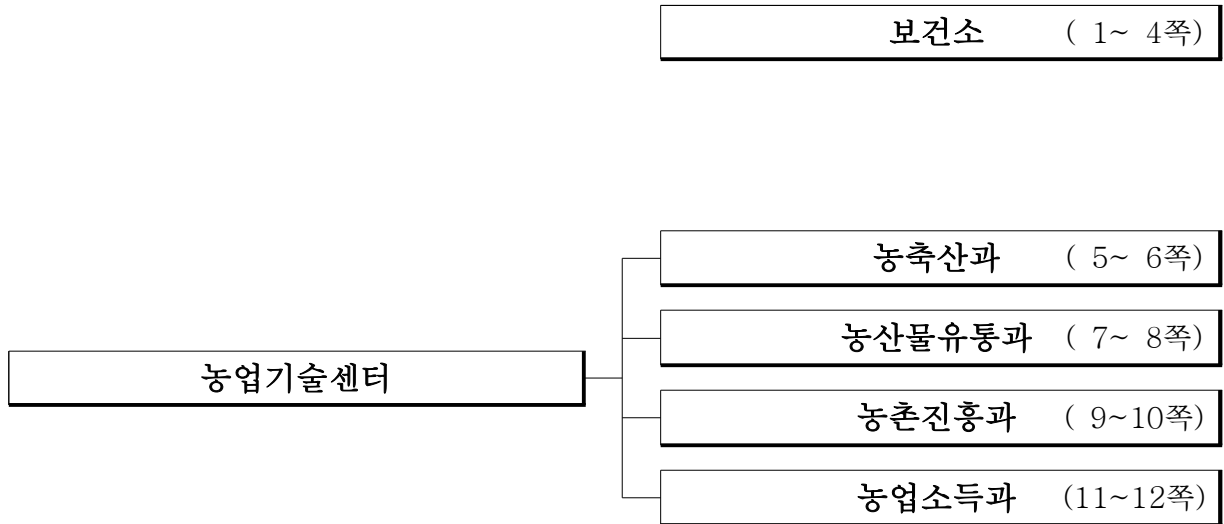
담당	분장 사무	
<b>산단 개발</b>	<b>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b>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담당	분장 사무	
산단 지원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10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11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12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13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담당	분장 사무	
법률 지원	경제자유구역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	
	1	산단 소송 지원
	2	산단 고소·고발 업무 추진



[별표 2] 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1. 보건소

보건소장

담당	분장 사무	
보건 행정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1	공중보건 의사 배치 · 복무 관리
	2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
	3	보건지소 · 진료소 운영 및 지도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	보건지소 의약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업무
	7	보건사업 업무기획 및 조정
	8	의료반 운영 및 각종의료지원 업무
	9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진단 등 신고

담당	분장 사무	
감염병 관리	감염병 전담 대응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책상황실 운영	
	감염병 상황관리(24시간 긴급상황 대응)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	
	한센병 등록환자 관리	
	예방접종 사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관리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결핵환자관리(등록, 검진, 관리)	
	방역소독사업 (연막, 연무, 수리)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및 각종 감염병 관리 웹 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기생충퇴치사업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사업	

담당	분장 사무	
의약	예방의약에 관한 사항	
	1	의무 및 약물관리
	2	의료기관, 약국 행정처분
	3	구조 및 응급처치
	4	의, 약 무 민원처리
	5	마약류관리 및 장기이식
	6	재난관리
	7	365 안심병동사업
	8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9	의료기기 및 화장품관리

담당	분장 사무	
건강 지원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1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지원
	2	국가암 조기검진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지역사회 건강조사
	5	노인인고관절 수술비 등 지원
	6	저소득층 특수질환 조기검진사업
	7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관리
	8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담당	분장 사무	
건강 증진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진료 및 전담인력관리)
	3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연계사업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	만성질환관리사업(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6	금연사업(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7	모자보건사업
	8	재가장애인 등록 및 재활치료
	9	경로당 방문진료
	10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1	한의학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12	어르신틀니사업
	13	건강증진사업
14	분만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담당	분장 사무	
치매 안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치매관리사업
	2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4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5	치매조기 검진사업	

담당	분장 사무	
진료	진료에 관한 사항	
	1	건강검진 업무
	2	민원 제증명 발급, 수입금 관리 등 민원실 운영
	3	성병, 에이즈 등 각종 검사관리
	4	건강검진, 민원 병리검사 관리
	5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등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7	특수의료장비 관리
	8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업무

담당	분장 사무	
안전 위생	공중이용시설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	식품영업(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개설업무
	3	위생지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4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5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
	6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7	식품·공중위생 교육·홍보

## 2.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장

담당	분장 사무	
농업 정책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경관보전 직불제 및 경관작물 축제
	4	농촌특산단지 및 농업법인 육성지도
	5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7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8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농업 지원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1	양곡 수급관리
	2	식량작물(쌀, 밭농업) 직불금 지원
	3	FTA 대책 및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 직불제
	5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6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담당	분장 사무	
축산 경영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돈산업 육성
	5	양봉, 토봉산업 육성
	6	기타 가축 육성
	7	축산물 브랜드 육성
	8	축사환경개선

담당	분장 사무	
가축 위생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제단 운영
	5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6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7	축산물 위생 전반

담당	분장 사무	
농기계 지원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2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체관리
	3	농업기계화 촉진 및 실수요자 교육
	4	농업 기계화사업
	5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6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농산물유통과장

담당	분장 사무	
수출 지원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	농·특산물 수출관련 전반
	2	수출확대 종합계획 수립
	3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홍보
	4	수출전문업체 및 국내외 바이어 육성관리
	5	수출농단 및 관련시설 지원관리
	6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7	수출홍보 마케팅 지원

담당	분장 사무	
유통 마케팅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2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3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 및 지도
	4	농·특산물의 쇼핑몰 운영관리
	5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6	온라인 판매처 확보 등 판로 개척

담당	분장 사무	
농산물 가공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	농산물가공창업지원 및 육성
	3	농업인 소규모 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
	4	농산물 가공관련 연구회 육성 지원
	5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및 보급
	6	농산물 소득 활동 지도



담당	분장 사무	
로컬 푸드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1	지역푸드플랜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2	음식(문화)관광 활성화
	3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4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추진
	5	로컬푸드 가공활동 육성 및 지원
	6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사업

담당	분장 사무	
디자인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에 관한 사항	
	1	포장디자인 개발 활용
	2	농산물 포장재 통합 관리 및 지원
	3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4	농산물 브랜드 통합관리 및 지원
	5	수출포장 디자인 개발 및 지원

농촌진흥과장

담당	분장 사무	
농업 인력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2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
	3	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4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5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
	7	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
	8	농업경영 개선지도
	9	농업인 정보화 촉진사업

담당	분장 사무	
농촌 관광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1	농촌체험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3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관리 지도
	4	농산물 및 소규모 마을축제
	5	농가민박, 관광농업 육성 및 관리
	6	농촌관광 체험행사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담당	분장 사무	
농촌 자원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	농촌자원사업의 계획 및 평가
	2	농작업환경개선 지도
	3	생활문화전승 및 기술지원
	4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
	5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6	농촌여성 활력 증진교육
	7	향토음식 발굴 및 보급
	8	농촌교육농장육성 및 관리

담당	분장 사무	
귀농 귀촌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	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
	4	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
	5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
	6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7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농업소득과장

담당	분장 사무	
스마트 농업	농업의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	
	1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2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5	과학영농시설 운영
	6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7	기능성 신소득작목 육성
	8	인공지능 도입 스마트농업 총괄

담당	분장 사무	
식량 특작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1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3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술지도
	4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5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6	토양·식물체·관개수 등 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분석
	7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 지원사업
	8	버섯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지도
	9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10	잠업 기술 지도

담당	분장 사무	
원예 과수	원예·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원예산업 종합계획 및 생산
	2	원예작물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3	채소·화훼·과수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도
	4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5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6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7	원예작물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8	과수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9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10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담당	분장 사무	
드론 활용	드론 관리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드론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2	드론활용 영농 기술 접목 사업 발굴 및 육성
	3	드론활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지원
	4	드론활용 안전관리지도 및 홍보
	5	드론활용 전문인력양성 기술교육
6	드론활용 일자리 창업지원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0조 관련)

읍·면	직 위	직 급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하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개면사무소	화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악양면사무소	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량면사무소	적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횡천면사무소	횡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사무소	고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남면사무소	금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 행정복지센터	진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보면사무소	양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천면사무소	북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청암면사무소	청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옥종면 행정복지센터	옥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⑥(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④(생략)

###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실·국의 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9 - 536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국 설치 및 과 증설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의 정원 총수를 699명(증 16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70명→686명(증 1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3)

- 총계 683명→699명(증 16명)

- 일반직 계 652명→668명(증 16명)

- 5급 이상 41명→ 43명(증 2명)

- 6급 이하 611명→625명(증 14명)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shfghdrl@korea.kr](mailto:shfghdrl@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3명”을 “69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0명”을 “68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총 계	699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68	-						
4급	4	4						
4급~5급	1			1				
5급	38	17	2	1	5		1	12
6급 이하 계	625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사	2							
지도직 계	25	-						
지도사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83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70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p> <p>----- <u>699명</u>-----</p> <p>-----.</p> <p>1. ----- <u>686명</u></p> <p>2. (현행과 같음)</p>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⑥(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군의 정원 총수를 699명(증 16명)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 (안 제2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체(5년간) -----금 2,283,000천원

- 충원(16명) 인건비(자체) : 금 2,283,000천원

나. 추계의 결과

- 충원(16명)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인건비	240,000	492,000	504,000	517,000	530,000	2,283,000
세입	자체예산	240,000	492,000	504,000	517,000	530,000	2,283,000

※ 9급 03호봉 연평균 인건비기준 : 30,000천원

### 3. 관련 의견

가. 엑스포, 세계농업유산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 과(科) 신설(특화산업과)

나. 정부·경남도 정책 방향 및 복지서비스 강화, 농가소득 증대,

군민의 안전 및 보호, 현장민원 응대를 위한 담당 신설

### 4. 작성자 : 행정과장 최영규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재원조달		240,000	492,000	504,000	517,000	530,000	2,283,000
자체 수입	소계	240,000	492,000	504,000	517,000	530,000	2,283,000
	지방세	240,000	492,000	504,000	517,000	530,000	2,283,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세로 충원

## 3. 부대의견

- 인구 15만 미만 군 : 3국 설치 가능
- 엑스포, 세계농업유산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 과(科) 신설(특화산업과)
- 정부·경남도 정책 방향 및 복지서비스 강화, 농가소득 증대,  
    군민의 안전 및 보호, 현장민원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담당 신설

## 4. 협의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 5. 작 성 자 : 행정과장 최영규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9 - 537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하 동 군 수

###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가. 총 정원 16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

나. 정부·경남도 정책 방향 및 복지사각지대해소, 농촌 경제활성화, 군민의 안전 및 보호, 현장민원 응대를 위한 정원 조정

- 국장 1, 과장 1, 담당 7, 직원7(국도시책 2, 격무보강 2, 담당신설 3)

###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개편

- 당초 : 2국 1담당관 15과 2직속 1의사(22개 과소), 13읍면

- 개편 : 3국 17과 2직속 1의사(23개 과소), 13읍면 ※ 특화산업과 신설

나. 직제개편 <156담당 → 163담당 / 증 7담당>

- 본청담당 : 78담당 → 83담당(증 5담당)

- 직속기관 : 27담당 → 26담당(감 1담당)

- 읍 면 : 50담당 → 53담당(증 3담당)

- 의회사무과 : 1담당

※ 양보,청암,북천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

다. 정원조정

- 현 정원 : 683명 → 699명(증 16명)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shfghdri@korea.kr](mailto:shfghdri@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하동군 규칙 제 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99	351	72	63	13	22	178
정 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일반직 계		668	347	72	38	13	22	178
	4급 소계		4	4					
	서기관·기술서기관		4	4					
	4~5급 소계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보건진료사무관		1		1				
	5급 소계		38	17	1	5	2	1	12
	행정		4	3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5	5					
	행정·농업		3	1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4	1				1	2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4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6급 소계		166	84	14	10	2	5	51
	행정		9	9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6	6					
	운전		4			1			3
	행정·세무		14	8	1			1	4
	행정·사회복지		10	6				1	3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21	6		4		1	10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8	16					2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6						6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행정·세무·농업		8	3					5
	행정·세무·시설		2	2					
	행정·세무·전산·농업		3	1			1		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6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6		3				3	
행정·시설·환경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행정·공업·환경·시설	4	4					
		행정·농업·녹지·환경	3	1					2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3	1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통신운영	3	2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7급 소계		188	95	19	10	4	9	51
	행정		20	14		1	2	1	2
	세무		1	1					
	전산		1	1					
	사회복지		9	2				1	6
	속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6	11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1	3	2			2	4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7	6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9	6		1		2	10
	행정·시설		16	12					4
	행정·환경		2	2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보건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		5	2			1		2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4	1		1			2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8	5					3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8급 소계		151	70	33	3	2	3	40
	행정		15	8			2		5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1	3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1						
	해양수산		2	2					
	보건		12	2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10	6					4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		2	2					
	운전		6	1					5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8	3				1	4
	행정·전산		2	2		1			
	행정·전산·농업		10	2					7
	행정·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		5	3					2
	행정·시설		9	9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5	5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1	3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9	3					6
	행정·농업·시설		7	5					2
	행정·보건·환경		5	2				1	2
행정·공업·시설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9급 소계		120	77	4	10	1	4	24
	행정		20	14		2		2	2
	사회복지		18	7				1	10
	환경		2	2					
	공업		5	5					
	해양수산		1	1					
	보건		2	2					
	운전		3				1		2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9	5				1	3
	행정·농업		8	3		3			2
	행정·시설·방호		18	18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		2			2			
	보건·간호		3		3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전산·통신		3	2		1			
	행정·세무·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7	3		2			2
행정·환경·시설·방재안전		5	4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별 정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⑥(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550호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7급상당) 채용시험계획 공고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9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수목보호전문가	지방일반임기제 7급상당(지방녹지주사보 )	1명	2년	산림녹지과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수목보호 전문가	- 10리 벚꽃길 보호사업 총괄 - 관내 가로수 수목 등 산림보호 관련 업무 수행

###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4. 응시 자격 기준

###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자격요건(필수)
수목보호 전문가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조경학, 산림자원학, 산림환경자원학
	우대조건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 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 : 식물보호, 조경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1항 4호)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수목 보호 (3년이상경력)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60,139천원	42,713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6.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9. 5. 9(목)	'19. 5. 9 ~ '19. 5. 20	서류전형	-	'19. 5. 22.
		면접시험	'19. 5. 23.	'19. 5. 24.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9. 05. 09 ~ 05. 20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7급 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8. 제출 서류

###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7급 상당 - 7,000원
-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산림녹지과(☎ 055-880-2493)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b>※응시번호</b>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의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지방녹지주사보 (일반임기제)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하동군 수입증지 6,7급(7,000원) 8,9급(5,000원)	

<b>※응시번호</b>		<b>응 시 표 (지방일반임기제 임용시험)</b>				
응시직급	지방녹지주사보 (일반임기제)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의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				
2019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뒷 면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  
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 붙임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하동군은 지방임기제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사진 및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이메일,휴대폰번호,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 전·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19. . .

작성자    성명 :                    (서명)

